

10-2. 중수도 현황

지역 (시·군·구)	건축물명/ 개발 사업명	시설물 용도/ 개발사업구분	주소	법적시설 유무 (대상/ 미대상)	설치 완료일 (년/월/일)	가동 개시일 (년/월/일)	시설현황		중수도 이용량 (m³/일)	중수도 용도	연간 운영비 (백만원/년)
							건축 연면적 (m²)	처리용량 (m³/일)			
(1)	(2)	(3)	(4)	(5)	(6)	(7)	(8)	(9)	(10)		

※ 2018년 12월 현재 설치 완료된 중수도의 현황을 작성,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

작성방법

(1) 건축물명/개발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공장 및 개발 사업명
(2) 시설물 용도 및 개발사업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적시설 구분 기재 (작성 TIP 참조)
(3) 법적시설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설치의무대상을 말함
(4) 설치완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설치확인서 상의 설치완료일, 단, 설치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비의무시설로 설치신고 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준공일(시용승인일)
(5) 가동개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수도시설의 가동개시 연월일을 기재함
(6) 건축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려면 연면적은 300×4=1,200㎡
(7) 처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재 기초자료(24) 참조
(8) 중수도 이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물의 양을 기재하고, 미기동시에는 미기동 사유를 기재 기초자료(24) 참조
(9) 중수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중수도의 용도(청소·화장실용수, 세탁실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10) 연간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전력비, 운영비 등을 연간으로 환산한 비용

작성
tip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기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기목에 따른 방송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니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12)	기타 제1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물 용도 구분 기재(ex. 00번 제10호에 따른 00시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외의 개발사업
6)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14)	「도시개발법」 제2조제1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1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3)~16)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작성
tip

■ 중수도의 시기별 적용기준

구 분	2001.9.29. ~ 2007.9.27.	2007.9.28. ~ 2011.6.8.	2011.6.9. 이후
해당법령	「수도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하수도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
법적 의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 공장(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 • 대규모점포 •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 업무시설, 교도소 • 방송국, 전신전화국 (*공장 이외에는 모두 건축연면적 60,0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 공장(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 •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공장 이외에는 모두 건축연면적 60,0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 공장, 발전시설(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 •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 지지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공장 이외에는 모두 건축연면적 60,000㎡이상 이고 이래항목은 건축연면적 해당 없음)
재이용량	물사용량의 10% 이상	물사용량의 10% 이상	물사용량의 10% 이상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용 도	세 부 설 명
청소·화장실용수	• 건물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세척·살수용수	• 도로, 건물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조경용수	•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친수용수	•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 하천, 저수지 및 소류(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공업용수	• 냉각용수, 보일러 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10-3. 빗물이용시설현황

지역 (시·군·구)	시설명	건축물 용도 구분	위치 (주소)	법적시설 유무 (대상/ 미대상)	설치 완료일 (년/월/ 일)	설치비 (백만원)	집수면	여과 등 처리시설 유무	저류조 용량 (m³)	연간이용량 (m³/년)	이용 용도	연간 운영비 (백만원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되, 개별주택은 제외

작성 tip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의 시기별 적용기준

구 분	2001.9.29. ~ 2011.6.8.	2011.6.9. ~ 2014.7.16.	2014.7.17. ~
해당법령	「수도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적 의무대상	• 운동장 또는 체육관 (지붕면적 2,400㎡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공영무시설(군사, 국방시설 제외)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붕면적 1,000㎡ 이상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영무시설(군사, 국방시설제외) 및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면적 1,000㎡ 이상) • 공동주택(건축면적 10,000㎡ 이상) • 학교(전부, 유치원 제외, 건축면적 5,000㎡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골포장(부지면적 10만㎡ 이상)
설치용량	• 지붕면적×0.05(m)이상	• 지붕집수면적×0.05(m)이상	• 지붕집수면적×0.05(m)이상 • 연간 물이용량의 40%이상을 활용가능한 용량(골포장)

II. 세부항목별 작성방법

■ 작성방법

(1)	지역(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단위, 시·군은 시·군 단위로 작성
(2)	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명칭
(3)	건축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공동주택, 공공청사, 학교,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 기타(오피스텔, 호텔, 교회, 지역자치센터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구분 기재
(4)	위치(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주소
(5)	법적시설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설치의무대상을 말함
(6)	설치완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설치확인서 상의 설치완료일, 단, 설치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비의무시설로 설치신고 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준공일(사용승인일)
(7)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나 설비 기기를 소정의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
(8)	집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의 차집을 위해 강수가 내려 집중되는 면
(9)	처리시설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모래여과, 필터, 스크린 등) 및 초기유수배제장치 등
(10)	저류조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의 용량
(11)	연간 이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 연간 이용량 기재 기초자료(23) 참조
(12)	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화장실, 세척살수, 조경, 친수, 농업, 공업, 기타 용도
(13)	연간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전력비, 운영비 등을 연간으로 환산한 비용

(23)기 초 자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세 부 항목

별첨번호 제 호		번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위치		
	① 시설용량		m ³
	② 사용용도		
	설치비용		원
	착공일		③ 완료일

① 10-3(11)
시설용량(천톤/일)

② 10-3(12)
용도별 이용량
(천톤/년)

③ 10-3(6)
설치 완료일(년/월/일)

(24)기 초 자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중수도 설치확인서)

세 부 항목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① 중수처리 용량(m ³ /일)	
② 중수이용 예정수량(m ³ /일)	
설치완료일	
기동개시일	

① 10-2(7)
시설현황-처리용량(m³/일)

② 10-2(8)
중수도 이용량(m³/일)

I
자진
가단
개요
필요

II
자기
조사
자료
출적
진단